

# 충청북도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1. 심 사 경 과 1993. 3. 6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문교사회위원회
  -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2월 27일
    - 회부일자 : 1993년 2월 27일
  - 다. 상정일자 : 제87회 임시회
    -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 3. 4)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가정복지국장 장 상 자)

#### 가. 제 안 이 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대상제 중 후보자 심사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로 청소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고 시상시기를 현실에 맞게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실시하기 위함.

#### 나. 주 요 골 자

- 수상후보자는 시장, 군수,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에서 1차 심사 후 추천하도록 한 것을 시장, 군수, 출장소장이 직접 추천하도록 하고,

- 청소년대상후보자 심사 및 결정방법에있어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의 심사후 복수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1명씩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추천마감일 후 10일 이내  
에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15인이내로 구성  
심사후 도지사가 결정토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김영만 )

- 가. 수상후보자는 시장, 군수, 출장소장이 직접 추천토록 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고,
- 나. 수상자의 심사에 있어 종전에는 충청북도 청소년육성 지방실무위  
원회에서 하던 것을 심사의 능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  
이에 따른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상자결정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  
하였으며,
- 다. 大賞施賞은 매년 12월에 시행하던 것을 청소년의 달인 5월로 변경  
하려는 것 등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大賞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충청북도 지방청소년위원  
회운영 조례의 지방청소년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단일조례 운영  
방법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 없 음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 원 안 가 결 "

7. 소수 의견 요지 : " 없 음 "

8.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가. 개정 조례안

나. 신.구문 대비표.